

서울특별시 출연 예술단체 설립·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김진수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893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15년 11월 17일

발 의 자 : 김진수, 이상목, 이성희,
김기만, 김창원, 문상모,
김구현, 문형주, 김인제,
김기대, 우미경 의원
(11명)

1. 제안이유

조례에 기본재산에 관한 규정만 있을 뿐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3항제3호에 따른 출연근거에 관한 내용은 존재하지 않아,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시의 법인 출연근거 신설(안 제5조제3항)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
제4조제3항제3호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출연 예술단체 설립·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출연 예술단체 설립·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조 (기본재산 등) ③ 시는 법인의 설립·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법인에 출연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5조 (기본재산 등) ① 예술단체의 기본재산은 시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.</p> <p>② 예술단체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시의 출연금, 예술단체의 사업수입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〈신 설〉</p>	<p>제5조 (기본재산 등) ① 예술단체의 기본재산은 시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.</p> <p>② 예술단체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시의 출연금, 예술단체의 사업수입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.</p> <p>③ <u>시는 법인의 설립·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법인에 출연할 수 있다.</u></p>

서울특별시 출연 예술단체 설립·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- 해당 사항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제2호

3. 미첨부 사유

- 별도의 비용발생 내역 없음

4. 작성자

- 서울특별시의원 김 진 수